

위탁가정의 기준(제2조 관련)

구분	위탁가정의 기준
<p>1. 전문가정 위탁</p>	<p>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</p> <p>가. 위탁된 보호대상아동(이하 “위탁아동”이라 한다)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</p> <p>나.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</p> <p>다.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. 다만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라.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</p> <p>마.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</p> <p>바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</p> <p>1) 가정위탁보호자(「민법」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</p> <p>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</p> <p>가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</p> <p>나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</p> <p>다)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</p>

	<p>라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</p> <p>마)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</p> <p>바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</p> <p>사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「평생교육법」 제32조제1항·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·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</p> <p>3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) 또는 2)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</p> <p>사.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</p> <p>아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</p>
<p>2. 일반가정 위탁·일시 가정위탁</p>	<p>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</p> <p>가.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</p> <p>나.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</p> <p>다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</p>